

「2021/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IPP)」

인도네시아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

-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

과 업 지 시 서

2021. 11.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과업지시서..... | 1 |
| 1. 개요..... | 1 |
| 2. 과업기간..... | 4 |
| 3. 과업내용..... | 4 |
| 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 | 8 |
| 5. 과업수행 방법..... | 11 |
| 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 | 12 |
| 7. 보안대책..... | 15 |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「2021/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(EIPP)」 인도네시아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-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

※ 본 과업은 1차년도 EIPP 과업인 「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」의 연속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의 국부펀드(SWF)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, 자보데타벡 지역의 부동산 매각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보다 고도화되고 구체적인 단계임

□ 과업배경

○ 수도이전 개관

-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, 물 문제, 지반침하 등 도시문제 대두

* 자카르타 수도권에 3천만명 밀집, 전체인구의 57%가 자바섬 거주

- 정부기관이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분산되어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저하

- 이에, 인니정부는 자바섬 밖 동부 칼리만탄섬(Kutai Kartanegara군, 北 Penajam Paser군)에 전략적 수도이전을 시행하여 불평등, 불균형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인니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음



○ 제약요인

-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개발 자금으로 약 330억 달러(40조 원)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최소 금액을 사용하고, 자금 대부분은 PPP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
-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대통령령 No.38/2015 PPP 법안 제정과 VGF(Viability Gap Fund) 등을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 유인 장치를 마련했으나 환리스크의 발생위험, 토지확보 문제, 사업 규모, 자금조달 및 예산 제약, 기타 비공식적 제반 애로사항 등의 문제로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음
-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적 투자 재원 마련과 체계적인 자금조달 방안 수립은 수도 이전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함

○ 협력국 정책 부합성

-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는 전략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를 통한 것임.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투자 유입을 늘리고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2020년 INA를 설립하였고, INA의 주요 임무는 (1) 자산 최적화 (2) 해외 및 현지 파트너와 공동 투자하여 투자 유치 (3)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
- INA는 자체 투자 펀드를 설립하거나(독립적으로 또는 제3자와 제휴를 통해) 제3자가 설립한 투자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음. INA는 자체 투자와 주요국 투자를 바탕으로 국부펀드(SWF)를 조성하고, 주요 투자 파트너와 공동 투자 형태로 다수의 하위펀드를 구성해 도로, 공항, 항만 등 다양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.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 우선 사업이자 주요 사업인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는 I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
- 또한,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에 따른 정부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1차년도 EIPP 과업 중 하나인 「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」을 통해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한 바 있음. 자보데타벵 지역의 잔존 자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은 수도이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

있음에 따라 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. 이와 함께 자보데타벡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

○ 국내 정책 부합성

- 한국 정부는 글로벌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, KIND)를 설립하였음. 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,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, 금융조달 능력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음.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 KIND는 글로벌인프라펀드(GIF) 및 글로벌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(PIS)펀드 등 건설 특화 펀드를 조성·운용하여,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- 자금조달방안 2차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수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운용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,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- 한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(세종시),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종전 부동산 매각 및 처리 사례가 있으며,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재산 매각 및 신수도 투자재원 방안에 주는 시사점이 큼

○ 사업 필요성

- 수도 이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요구되며, 자금 대부분을 PPP를 통해 조달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수립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제시가 필요함
-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의 설립과 함께 신수도 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기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적지 관리 및 국부펀드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잠재 투자자 대상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 투자 실현을 위한 경제 및 재정 평가 도구(예비타당성)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

□ 과업목적

- 상기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적지 및 국부펀드 활용방안과 한·인니 금융협력을 위한 정책 자문 제공을 통한 신수도 자금 조달 방안 고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
- ※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인니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
- ※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의 2020/2021 인니 EIPP(경제혁신파트너쉽프로그램), 인니 K-City Network를 통해 수행될 신수도 건설관련 타 정책자문과 기타 인니정부의 MP, 도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- ※ 과업수행자는 인니 정부 및 현지기관,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,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(e.g.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(자문) 회사에서 시행)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300일

3. 과업내용

[공동연구]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해 한국 경험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계획수립 체계 마련

□ 국부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전략

- 해외 국부펀드 운용 사례를 통한 현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(INA) 및 국부펀드(SWF) 구성 및 운영 검토
 -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정부 투자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며, 이를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INA 국부펀드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

- INA 자본금 확충에 필요한 금융 조달 자문 및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대한 IR 활동 방안 도출
 - 한국의 국부펀드 사례를 통한 INA의 운영 조직 및 투자 편람에 대한 자문 및 지원
- 국부펀드 및 기타 투자수단을 통한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유치전략
 - 국부펀드의 신수도 관련 우선 투자 인프라 사업 발굴 및 IKN 투자 전략
 - 공동 투자 또는 제휴를 통해 인프라 시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활용 계획 및 인프라 사업을 통한 IKN 투자 전략
 - 신수도 개발 경제 및 재정 평가 도구(예비타당성) 수행방안 검토
 - 신수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유망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, 인프라 중심의 투자플랫폼인 INA의 자산관리 및 가치 창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제안
- 자보데타백 지역 정부 자산(이전적지) 매각 등 활용방안
- 한국의 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정부 기관 및 공기업 이전 정책 배경 검토
 - 국유재산 및 공기업 재산 매각 절차
 - 이전적지 활용 방안(매각/임대 등)
 - 매각 및 이전에 따른 지자체 협력 사례
 - ※ 한국 경험을 통해 기본방향, 추진과정, 방법, 법적 근거, 현황,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
 - 자보데타백 지역 이전적지 활용방안 모색
 - 정부, 공공기관, 공기업 소유 자산 가운데 신수도로 이전될 자산/부동산/건물/시설 도출
 - 신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공실 발생예정 자산 목록 및 순서 도출
 - 이전적지/자산 특성/위치에 따라 매각, 임차, 사용권 부여 등 최적의 활용방안을 선정할 기준 및 가이드라인* 제언

- * 가이드라인은 모든 관련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, 지역 경쟁력 보전과 토지 및 공간 구조의 효율적 활용 고려
- 매각, 임차, 사용권 부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추산, 신수도 자금조달 반영방안 마련
- 이전적지 주변부지 개발 방안 제언

□ 한-인니 민/관 금융협력 방안

- 국부펀드 분야
 - 한국 민/관 금융기관*의 인니 신수도 이전 특수목적 펀드 참여 또는 공동 운영(Co-GP) 방안 검토 및 제시
 - * KIC (한국투자공사), 국민연금(NPS), PIS/GIF 펀드, 수출입은행 및 민간 상업은행
 - 한국 민/관 금융기관 대상 세미나 (간담회), 투자설명회 개최
- 자보데타백 지역 정부 자산 분야
 -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의 “국·공유재산관리 개발” 업무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
 - 인니 정부 자산관리를 위한 한-인니 양국간 협력 방안 (AMC-JV 설립 등) 검토 및 제시

[역량 강화]

- 주제별 양국 관련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
 - 한국의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(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행복청 등), 연구 기관(국토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)을 방문하여 수도이전, 국가영토 정책개발,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 투자 관련 프로젝트, 한국의 PPP 사례와 관련한 한국 정책 및 실무경험을 공유
 - 세미나, 강의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방안 및 수도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

[Market Sounding]

- 신수도에 대한 민간 섹터의 투자관점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의견 (Market Sounding) 조사
 - 잠재적인 한국 민간사업자들과 사업에 관련된 실행 가능성, 민간사업자의 사업실행 역량, 시장의 사업수용능력, 시장의 성숙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취합
 - 이를 통해 신수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기업의 시각을 반영

[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]

-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,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

[경제협력 강화]

-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섹터 투자관점에서 한국기업(금융기관, 공기업, 건설사, 엔지니어링사 등)을 대상으로 시장 의견(마켓사운딩) 조사,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등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

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『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』, 『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』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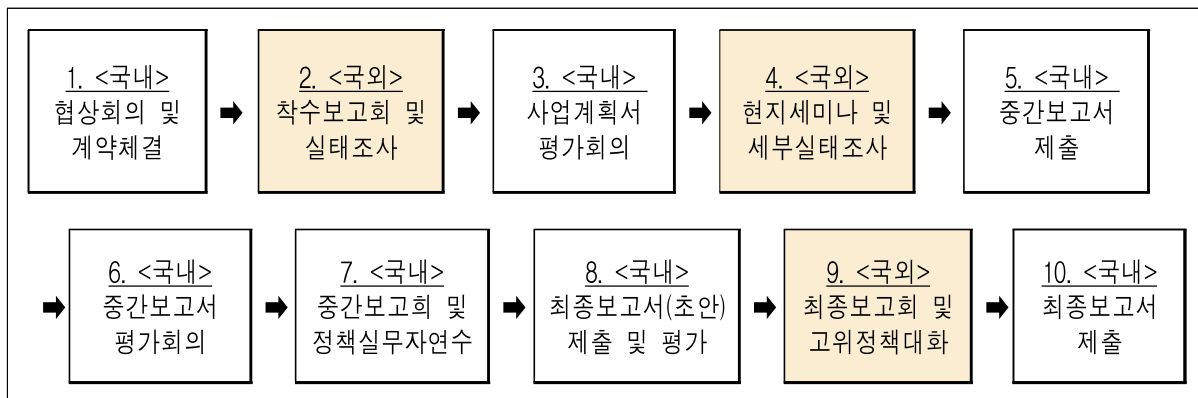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-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
- 국외출장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시 출장자 및 연수 참가자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,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. 아울러, ‘국외 체류 시 안전매뉴얼’에 따라 안전지침,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함

- 해당 사업의 특성상, 사업의 범위,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
- 과업수행사의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함
- 과업내용(주요 결과물)은 발주자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
연구책임자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우리 공사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,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

5. 과업수행 방법

<2021/22 EIPP 사업 단계>



※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

□ 일반사항

-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(통합 실시),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(통합 실시),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(통합 실시),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(통합 실시), 국내공유세미나* 등을 수행

*국내공유세미나는 사업종료 이후 KIND에서 주관하며, 요청시 사업수행 기관(연구진)은 동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물 발표를 수행

- 필요시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
-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·집행·결과 공유 활동 등은 「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(기획재정부, 2019.10.2.)」에 따라 실시

□ 현지 실태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월간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률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-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(착수계, 보안각서, 과업수행계획서 등)

□ 금차 최종보고서

- 내용: 진행된 사업의 주제별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, 협력국 현황 분석 작성
- 사업진행 경과보고서(국문 5페이지 이상), 주제별 보고서(국문 10페이지) 각 1부
- 제출방식 : 이메일

□ 사업 단계별 활동계획보고서(국·영문)

- 내용 : 현지조사,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),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계획 등
- 기한 : 활동 착수일자 2주 전
- 제출방식 : 이메일

□ 사업 단계별 활동결과보고서(국문)

- 내용 : 현지조사, 보고회(착수·중간·최종),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결과 등
- 기한 : 활동 종료일자 2주 내
- 제출방식 : 이메일

□ 사업계획서(국문)

- 내용 : 확정된 과업 목표 및 범위, 사업 추진계획 및 보고계획
- 기한 :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내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서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및 세부실태조사 및 연구시 확인한 주요 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- 기한 : 현지 중간보고서 평가회 개최 2주전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
- 중간보고회는 현지 수도이전 관계공무원 참석하 정책실무자연수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보고 PPT 준비)
- * COVID-19로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- 계약 해당년도의 연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금차최종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-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(중간보고서)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(200페이지 이하, 국문·영문)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·영문 각 3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- 필요시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(국·영문·인니어 각 10부)
- 기한 :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평가회 개최 3주 전 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
-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- 제출방식: 공문 및 이메일, 인쇄본(최종보고서), USB 1세트(성과품 관련 모든 자료)

□ 사업종료보고서(국문)

- 내용 : 사업개요, 수행과정,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
- 기한 : 계약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
- 제출방식: 공문 및 이메일

□ 수정보고서

- 사업계획서, 중간보고서, 최종보고서는 기재부 및 KIND내부위원 외 분야별 자문평가위원의 자문(또는 평가)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자문(또는 평가)의견에 따른 수정보고서 제출
- 제출방식: 이메일

※ 착수보고서, 사업계획서 외 보고서 제출기한, 보고서/USB 제출부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는 사업활동 점검을 위해 별도 보고서 제출 요청 가능

※ 점검회의 실시(최소 3회) : 1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사업계획서), 2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), 3차 점검회의(성과품 :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) 등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